

의안번호	2213461
의 퇴 인	서미화의원
회 답 일	2025. 12. 3.
추 계 번호	25D5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상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400만원, 2030년 8,100만원 등 향후 5년간 1억 7,200만원(연평균 3,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연평균
중증장애인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을 상향 (안 제122조의2제1항)	74	—	17	—	81	172	34

주: 1. 중증장애인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을 상향(안 제122조의2제1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장 최근의 공직선거별 후보자 수, 선거비용 보전 집행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제4항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선거의 후보자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0% 증액하도록 규정	의무 규정
2	안 제122조의2제1항 (선거비용의 보전 등)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1조제4항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선거비용 보전 항목 등은 동일하여 선거비용 보전 규모가 직접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2	안 제122조의2제1항 (선거비용의 보전 등)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 보전율을 상향시키는 경우 보전액이 증가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표 2]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현행법	개정안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선거비용 <u>50%</u> 보전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선거비용 <u>60%</u> 보전
-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득표율 득표율 5% 이상 10% 미만 선거비용 <u>10%</u> 보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궐선거는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등 관련 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참고
 - 다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득표율을 조사한 결과, 개정안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어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본 추계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수, 득표율,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바탕으로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여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수 및 보전액 증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본 추계에서는 각 공직선거별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보전 대상자 수, 추가 보전율 10%²⁾를 곱하여 산출
 - 공직선거별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
 -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보전대상 후보자 수, 보전율, 보전액 등을 활용하여 추정
 - 보전 대상자 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중증장애인 비율 2.2%³⁾를 적용하여 산출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9)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0%	1.9%	2.0%	2.0%	2.0%

2) 현행법에 따라 10% 이상 15% 미만 후보자는 선거비용 50% 보전이고,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에게 60% 보전으로 규정하여 추가 보전율은 10%. 또한 현행법에 따라 5% 이상 10% 미만 후보자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므로 0%이고, 개정안에서는 10% 보전으로 규정하여 추가 보전율은 10%

3)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 기준 인구 수는 2024년 말 44,340,891명,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현황 통계 기준 '심한 장애' 등록자 수는 2024년 말 962,843명으로 중증장애인 비율은 2.2%로 추정

[표 3] 선거비용 보전을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과정

(단위: 원, 명)

구분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a)	대상자 수			추가 보전율 (c)	추가재정소요 (=a×b×c)
		후보자 수		중증 장애인 (b)		
지 선	시·도지사	1,344,997,171	5% 이상 10% 미만 득표	1	0	0
	구·시·군의 장	143,009,854	10% 이상 15% 미만 득표	20	0	0
			5% 이상 10% 미만 득표	21	0	0
	시·도의원	44,833,478	10% 이상 15% 미만 득표	17	0	0
			5% 이상 10% 미만 득표	28	1	4,483,348
			10% 이상 15% 미만 득표	561	12	41,972,236
	구·시·군의원	34,976,863	5% 이상 10% 미만 득표	378	8	27,981,491
			소계			74,437,074
	국 선	171,017,945	10% 이상 15% 미만 득표	17	0	0
			5% 이상 10% 미만 득표	64	1	17,101,795
			소계			17,101,795

주: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적용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년 기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8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율을 상향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7,400만원, 2030년 8,100만원 등 향후 5년간 1억 7,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율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중증장애인 선거비용 보전율 상향	74	—	17	—	81	1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수, 득표율,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